

자주 묻는 질문(FAQ)

기업에서 강원도 일자리대상 신청·접수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자료로서,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시·군 일자리부서 혹은 도 일자리 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자격 관련

Q1. 주공장은 강원도 내에 있고, 본사는 타 시·도에 있는 경우, (혹은 그 반대의 경우) 신청이 가능한지?

- 본사 혹은 주사업장(주공장)중 하나라도 도내에 소재하면 신청이 가능함.
- 다만, 근로자 증가수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때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 부분의 실적으로 평가함
- 따라서, 서류제출 시 도내·외 소재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.

Q2. 도내 소재한 중견(대)기업 주공장인데, 신청이 가능한지?

- 강원도 일자리대상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.
- 따라서 중견·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.

Q3. '자격 업종'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?

- 「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」 [별표 1]에 규정된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이 신청 가능하며,
- 제조업은 공장등록증,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해당 업종의 인허가증 사본등의 업종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. ※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, 업종자격 미달로 간주

**Q4. 과거에 강원도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,
2018년 이전에 강원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,
신청이 불가능한지?**

- 2019~2021년 '강원도 일자리대상'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,
 - '최우수상' 또는 '대상' 수상기업은 신청불가,
 - '우수상' 수상기업은 신청은 가능하나, '대상'에만 도전 가능함.
 - ※ 과거 우수상 수상경력의 기업이 최종 평가결과 '우수상'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에는, 수상기업에서 제외함
- 2018년 이전, '강원도 고용우수기업 인증'을 받은 기업은
인증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

2. 제출방법 및 향후일정 관련

Q1.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한 지?

- 온라인 제출은 불가함.
- '신청기업 소재지 관할, 시·군 일자리부서'에 직접방문하거나
우편송부만 가능함. ※ 접수마감일 18:00 도착 분에 한함

Q2. 일자리대상 선정·평가기준은 ?

- 「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2 평가기준*에 따르며,
 - * 총점(200점) = 정량평가(140점) + 정성평가(60점)
-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
강원도지사가 수상기업을 최종 선정함.(조례 제9조)

Q3. '현장조사' 는 언제, 어떻게 진행되는지?

- 1차 정량평가 후 상위 30%(약 30개)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함. ※ 대략 9월 경 시행하며, 해당기업별 일정 사전조율 후 방문예정
- 道の 현장조사관이 기업에 직접 방문,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기업관련 현황, 일자리 모범사례 등을 확인하며,
- 현장조사 결과는 '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'에서 수상기업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함

Q4. 심사결과는 언제쯤 발표하는지?

- 8월 초까지 기업의 신청·접수가 완료되면, 10월 초까지 적격심사→정량·정성평가→현장조사 등의 평가절차를 진행하고, 10월 말경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·발표할 계획임
- 수상기업 발표는 강원도 홈페이지 '고시공고'에 게시하고, 기업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임

3. 신청서 작성 관련

Q1.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근로자 증가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?

- 일자리대상 평가에 활용되는 실적은 '고용보험 가입자'를 기준으로 판단함.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.

Q2. 평가지표별로 증빙자료(고용보험 가입자 목록)을 모두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지?

- 평가항목별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(전년 6월말 기준 1부, 금년 6월말 기준 1부)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
- 기업 여건에 따라, 여러 평가지표를 하나의 가입자 명부에 통합하여 표시·제출해도 무방함. 이 경우, 평가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

Q3.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, '고용실적'에 포함될 수 있는지?
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라면, '근로자 증가실적' 항목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,
- '정규직 근로자' 항목에는 포함될 수 없음.
※ 단, 재외동포,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'정규직 근로자' 포함 가능

Q4. '정규직' 근로자의 정의는? 관련 증빙서류는?

- '정규직' 근로자라 함은 사업체에 채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,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함.
※ 한시적(기간제)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파견·용역·호출형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
- 따라서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(사본)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됨

Q5.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'연봉제 근로자'는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?

- 최초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없는) 사본을 첨부하면 '정규직 근로자'로 인정할 수 있음.
※ 매년 갱신하여 체결하는 '연봉계약서'는 불인정

Q6. '기업신용평가서'는 어떻게 발급받는지?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'신용정보업자'에 의뢰·발급가능함.
※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·평가 발급

Q7. '가감점' 항목에 해당되기 위한 유효기간이 있는지?
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실적을 인정함

Q8. '산업재해율 증빙자료'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?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재해율확인서발급(기업용) 신청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함.

Q9. 정성평가자료의 분량 제한이 있는지?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?

- 별도의 분량제한은 없음.
- 아울러, 올해부터는 정성평가 점수가 상향(30점→60점)된 만큼, 수치상 실적 외에 기업의 발전가능성, 일자리 우수사례 등의 정성적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임.